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11. 30(금)	담당부서	통상법무기획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4870) 신지현 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천서현 사무관(044-203-4874) 이명광 사무관(044-203-5765)

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협의

□ 산업부는 11.29(현지시간) 앙카라에서 터키 무역부의 **페트(PET) 양자 긴급수입제한(세이프가드) 조치*** 관련 **보상 협의**를 했다.

*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,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(MFN) 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

* (한)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/ (터키) 무역부 수입국장(PET 보상협의), 산업기술부 차관 면담(한-터키 산업협력 논의)도 병행

○ 터키 무역부는 터키 내 **페트(PET)** 기업 신청을 토대로 한-터키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(2.23.)했으며 최종적으로 **1년차 6.5%(최혜국 관세율), 2년차 6%의 관세를 부과했다.(10.31.)**

<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>

○ **(조사대상)** PET CHIP(HS 3907.69)

* 식품포장용 필름, 산업용 전선, 의료기기 부품, 스테이플파이버(섬유) 등 원료

○ **(대(對)터키 수출동향)** 33백만불 ('17년 기준, 전체수출 중 7위)

○ **(경과)** 2.23 조사개시, 4.19 공청회 개최, 10.13 조치 발표, 10.31 조치 부과

* 우리정부는 터키정부의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하여 3.25 답변서 제출, 4.11 정부서한 발송, 4.19 공청회 대응, 6.22·7.3·10.31 고위급 아웃리치 실시

□ 이번 보상 협의는 **"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경우 이와 동등한 관세액 만큼의 무역자유화 보상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"**라는 **한-터키 자유무역협정(FTA) 상품무역협정 제4.4조**에 의거해 개최했다.

○ 이번 협의에서 한·터키 양측은 **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**했으며, 더불어 한-터키 자유무역협정(FTA)에 근거한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, **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**했다.

□ 향후에도 산업부는 **터키와의 실무협의**를 통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**보상 논의**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, 터키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-터키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**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**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**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**하기로 했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천서현 사무관(044-203-4874),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이명광 사무관(044-203-57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한-터키 FTA 상 양자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**

▪ (제4.1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)

1.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,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**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**을 생산하는 **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**가 있을 정도로 **절대적이거나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**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**수입**되고 있는 경우, 수입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.

2.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

가. 이 협정에 규정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정지하는 것, 또는

나.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

1)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, 또는

2) 제2.4조(관세 인하 또는 철폐)에 따라 부속서 2(관세 인하 또는 철폐)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**기준 관세율**

▪ (제4.4조 보상)

1.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**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**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. 그 당사국은 **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 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**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협의가 **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**에 무역자유화 **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**, 자국의 상품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**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.**